

## 관 할 이 전 신 청

위 피고인에 대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고합 ○○○호 강간사건은 ○○지방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이 지방의 민심으로 보아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, 이 사건의 재판관할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인 ○○지방법원으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

6	<b>아시</b> 대한법률구조공단
1	***
or.kr#	

제출법원	직근 상급법원 <b>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</b>	
신청권자	·검사 ·피고인	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 법 규 형사소송법 15조	
불복절차 및 기간	없음(형사소송법 403조1항)	
신청사유	<ol> <li>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</li> <li>범죄의 성질, 지방의 민심,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때</li> </ol>	